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780 발의연월일: 2024. 8. 13.

발 의 자:김위상·김선교·임이자

윤한홍 · 김승수 · 구자근

김형동 · 김소희 · 이인선

고동진 • 조지연 • 김석기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.

그런데 늦어지는 출산 연령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정년 이후에 도 교육비 지출 등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반면, 소 득이 보전될 방법이 없어 노년층이 생계의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.

이에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년 이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고용할 것을 사업주에게 촉구하는 한편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재고용을 의무화하여저출생,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함(안 제21조).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사업주는 정년퇴직자가 희망할 때 정년퇴직자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정년에서 1년 이상,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정년에서 2년 이상의 기간까지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기관과 그 소속기관 또는 자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(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한한다)가 정년퇴직하는 경우 정년퇴직자가 희망하는 때에는 본문의 기간까지 재고용하여야 한다.

1. 국가기관

- 가.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- 나.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한다)
- 다.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위원회

- 2. 지방자치단체
- 3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·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
- 4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관서
- 5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- 6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・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・출연 기관
-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재고용하는 정년퇴직자가 희망할 경우 정년 이전에 근무하였던 부서와 직종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정년퇴직자의 재고용) ①	제21조(정년퇴직자의 재고용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사업주는 정년퇴직자가 희
	<u>망할 때 정년퇴직자의 자녀가</u>
	2명인 경우에는 정년에서 1년
	이상,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
	에는 정년에서 2년 이상의 기
	간까지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
	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
	기관과 그 소속기관 또는 자회
	사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(기
	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한
	한다)가 정년퇴직하는 경우 정
	년퇴직자가 희망하는 때에는
	본문의 기간까지 재고용하여야
	<u>한다.</u>
	<u>1. 국가기관</u>
	가.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
	중앙선거관리위원회
	나.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
	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
	기관을 포함한다)
	다.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

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 률」에 따른 위원회

- 2. 지방자치단체
- 3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

 원, 「초・중등교육법」・

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
- 4. 특별시・광역시・특별자치시

 •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

 관선
- 5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- 6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3조제1 항에 따른 지방공기업, 「지 방자치단체 출자・출연 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・출연 기관
-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재 고용하는 정년퇴직자가 희망할 경우 정년 이전에 근무하였던 부서와 직종에 우선 배치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<u>④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

<신 설>

② (생략)